

조선총독부관보(朝鮮總督府官報) 호외(號外) 1927(昭和 2)년 8월 31일 수요일

○ 고 시(告示)

조선총독부고시(朝鮮總督府告示) 제274호(號)

조선·만주 간 발착하물 통관취급규칙(朝鮮滿洲間發著荷物通關取扱規則)을 아래[左]와 같이 개정(改正)함.

1927(昭和 2)년 8월 31일

조선총독 임시대리(朝鮮總督臨時代理)

육군대장(陸軍大將) 우가키 가즈시게(宇垣一成)

조선·만주 간 발착하물 통관취급규칙(朝鮮滿洲間發著荷物通關取扱規則)

제1조(條) 조선총독부 철도국선(朝鮮總督府鐵道局線)과 남만주철도주식회사선(南滿洲鐵道株式會社線) 간(間)에 발착(發著)하는 소하물(小荷物) 및 화물(貨物)의 수출입수속(輸出入手續)은 아래[左]에 게시(揭示)한 것을 제외(除外)하고 운수기관(外運輸機關)에서 이것을 대변(代辦)함

- 1 세관소재(稅關所在) 역소(驛所)로부터 발송(發送)하여야 할 화물(貨物)에 대한 수출수속(輸出手續)
- 2 세관소재(稅關所在) 역소(驛所)에 도착(到著)하여야 할 화물(貨物: 단동[安東] 이외의 각[各] 역소[驛所]로부터 신의주[新義州]에 도착하여야 할 것을 제[除]에 대한 수입수속(輸入手續)
- 3 단동역(安東驛)에 발착(發著)하는 소하물(小荷物)에 대한 중국[支那] 및 조선(朝鮮) 수출입수속(輸出入手續: 신의주[新義州] 이외의 조선총독부 철도국선[朝鮮總督府鐵道局線] 세관소재[稅關所在] 역소[驛所]에 도착하여야 할 것의 조선수입수속[朝鮮輸入手續]을 제[除]함)
- 4 하송인(荷送人)이 하물탁송(荷物託送) 때 반대(反對) 의사(意思)를 표시(表示)한 경우에 있어서 수출입수속(輸出入手續)
- 5 운수기관(運輸機關)에서 대변(代辦)을 하지 아니하는 뜻[旨]을 공고(公告)한 경우에 있어서 수출입수속(輸出入手續)

제2조(條) 하송인(下送人)이 조선총독부 철도국선(朝鮮總督府鐵道局線) 세관소재(稅關所在) 역소(驛所)에 화물(貨物)을 탁송(託送)하고자 할 때는 미리 수출수속(輸出手續)을 위하여 수출면장(輸出免狀)을 운송장(運送狀)과 함께 당해(當該) 역소(驛所)에 제출(提出)함이 가(可)한 것으로 함.

하송인(下送人)이 단동역(安東驛)에 하물(荷物)을 탁송(託送)하고자 할 때는 미리 수출입수속(輸出入手續: 신의주[新義州]에 도착[到著]하여야 할 하물[荷物]로서 하송인[下送人]의

희망(希望)에 의하여 신의주[新義州]에서 수입수속[輸入手續]을 하는 것은 수출수속(輸出手續)만, 또 신의주 이외[以外]의 조선총독부 철도국선[朝鮮總督府鐵道局線] 세관소재[稅關所在] 역소[驛所]에 도착(到著)하여야 할 하물[荷物]에 대한 수입수속[輸入手續]은 하송인[下送人]이 희망[希望]한 경우에 한[限]함을 위하여 수출입면장(輸出入免狀)을 운송장(運送狀)과 함께 동(同) 역(驛)에 제출(提出)함이 가(可)한 것으로 함.

제3조(條) 본(本) 규칙(規則)에서 세관소재(稅關所在) 역소(驛所)라 칭(稱)함은 아래[左]의 역소(驛所)를 말함.

1 조선총독부 철도국선(朝鮮總督府鐵道局線)

부산(釜山), 대구(大邱), 경성(京城), 평양(平壤), 신의주(新義州), 마산(馬山), 군산(群山), 목포(木浦), 인천(仁川), 진남포(鎭南浦), 원산(元山)

2 남만주철도주식회사선(南滿洲鐵道株式會社線)

단동(安東)

제4조(條) 조선총독부 철도국선(朝鮮總督府鐵道局線) 세관소재(稅關所在) 역소(驛所)에 착(著)하는 소하물(小荷物) 및 동(同) 역소(驛所)에 발착(發著)하는 화물(貨物)은 당해(當該) 발착역소(發著驛所)와 단동역(安東驛) 간(間) 외국화물(外國貨物)로서 육로운송(陸路運送)의 취급(取扱)을 함. 단(但) 조선수입수속(朝鮮輸入手續)을 하는 것은 이 한(限)에 부재(不在)함. 관동주(關東州) 내(內) 각(各) 역(驛)에 발착(發著)하는 소하물(小荷物) 및 화물(貨物)은 당해(當該) 발착역(發著驛)과 단동역(安東驛) 간(間) 통과하물(通過荷物: 본드[bond])로 운송(運送) 취급(取扱)을 함.

제5조(條) 하송인(荷送人)은 운수기관(運輸機關)에서 통관수속(通關手續)의 대변(代辦)을 하여야 할 소하물(小荷物) 또는 화물(貨物)을 탁송(託送)하고자 한 경우에 있어서는 송장(送狀·invoice) 및 운수기관(運輸機關)이 정(定)한 하물명세서(荷物明細書)를 제출(提出)함이 가(可)함.

전항(前項)에 의한 하물명세서(荷物明細書)의 양식[式紙]은 관계역소(關係驛所)에 비치(備置)하여 하송인(荷送人)의 사용(使用)에 제공함. 하송인(荷送人)은 당해(當該) 양식[式紙]에 필요사항(必要事項)을 기입(記入)하고 서명(署名)할 것을 요(要)함.

내용(內容)이 단순(單純)한 소하물(小荷物)에 대하여는 송장(送狀·invoice)을 첨부(添附)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그 수탁(受託)을 하는 것이 유(有)하여야 함. 단(但) 송장(送狀·invoice)의 첨부(添附)가 무(無)함으로써 발생(發生)한 불이익(不利益)에 대하여는 운수기관(運輸機關)이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함.

제6조(條) 운수기관(運輸機關)에서 통관수속(通關手續)의 대변(代辦)을 하여야 할 하물(荷物)에 대하여 관세정률법(關稅定率法) 제7조(條) 및 1920(大正 9)년 법률(法律) 제53조(條)에 의하여 수입세(輸入稅)의 면제(免除)를 득(得)하고자 하는 자(者)는 하물탁송(荷物託送) 때 이것을 당해(當該) 역소(驛所)에 통고(通告)하고 또 수출면장(輸出免狀) 또는 증

명서(證明書) 혹은 허가서(許可書) 등(等)을 제출(提出)함이 가(可)함.

관세정률법(關稅定率法) 제8조(條)에 의하여 재수출(再輸出)을 하여야 할 물품(物品)을 조선(朝鮮)에 수입(輸入)하고 수입세(輸入稅)의 면제(免除)를 득(得)하고자 하는 자(者)는 하물탁송(荷物託送) 때 수입(輸入)의 목적(目的) 및 타일(他日)에 재수출수속(再輸出手續)을 하여야 할 세관(稅關) 기타 필요사항(必要事項)을 당해(當該) 역소(驛所)에 통고(通告)함이 가(可)함.

관세법(關稅法) 및 1920(大正 9)년 법률(法律) 제53호(號) 시행규칙(施行規則) 제34조(條) 제3항(項)에 의하여 외국산 화물(外國產貨物)을 조선(朝鮮)으로부터 수출(輸出)하고자 하는 자(者)는 수입(輸入)의 목적(目的) 및 타일(他日)에 재수입수속(再輸入手續)을 하여야 할 세관(稅關)을 당해(當該) 역소(驛所)에 통고(通告)함이 가(可)함.

관세정률법(關稅定率法) 제9조(條) 제1항(項) 및 제2항(項)에 의하여 수입원료품(輸入原料品)의 수입세(輸入稅)의 전부(全部) 또는 일부(一部)의 면제(免除)를 득(得)하고자 하는 자(者)는 하물탁송(荷物託送) 때 사용(使用)의 목적(目的), 제조업자(製造業者)의 성명(氏名), 제조장(製造場), 장치장(藏置場) 및 타일(他日)에 수출수속(輸出手續)을 하여야 할 세관(稅關)을 당해(當該) 역소(驛所)에 통고(通告)함이 가(可)함.

관세정률법(關稅定率法) 제8조(條)에 의하여 물품(物品)을 조선(朝鮮)으로부터 재수출(再輸出)하거나 혹은 관세정률법(關稅定率法) 제9조(條)제1항(項)에 의하여 제조품(製造品)을 조선(朝鮮)으로부터 수출(輸出)하고, 수입(輸入)할 때 제공(提供)한 담보(擔保)의 해제(解除)를 득(得)하고자 하는 자(者)는 하물탁송(荷物託送) 때 이것을 당해(當該) 역소(驛所)에 통고(通告)하고 수입면장(輸入免狀) 및 공탁수령증(供託受領證) 보관증(保管證) 또는 공탁수령증(供託受領證) 보관증(保管證)을 겸(兼)한 수입면장(輸入免狀) 기타(其他)의 필요서류(必要書類)를 제출(提出)함이 가(可)함.

수출입(輸出入)에 관하여 관계관서(關係官署)의 허가(許可)를 요(要)하는 하물(荷物) 등(等)에 대하여는 해당(該當) 관서(官署)의 허가증(許可證) 기타(其他) 필요서류(必要書類)를 제출(提出)함이 가(可)함.

하송인(荷送人)에 있어 수출입면장(輸出入免狀), 기타(其他) 회부(廻付)를 받고자 하는 경우 또는 수하인(受荷人)에게 송부(送付)를 청구(請求)하고자 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하물탁송(荷物託送) 때 이것을 당해(當該) 역소(驛所)에 통고(通告)함이 가(可)함.

제7조(條) 운수기관(運輸機關)에서 통관수속(通關手續)의 대변(代辦)을 하는 경우에 있어서 세관(稅關)의 검사(檢査)(檢査)를 받을 필요(必要)가 유(有)한 때는 하물(荷物)의 포장(包裝)을 풀거나 또는 하물(荷物)의 일부(一部)를 견본(見本)으로 세관(稅關)에 납부(納付)하는 것이 유(有)하여야 함.

제8조(條) 운수기관(運輸機關)에서 수입수속(輸入手續)의 대변(代辦)을 할 때는 관

세(關稅) 기타(其他)의 세금수수료(稅金手數料) 등(等)은 이것을 입체지변(立替支辦)하고, 도착역소(到著驛所)에서 하물(荷物)과 상환(相換)으로 수하인(受荷人)으로부터 이것을 수수(收受)함. 단(但) 조선총독부 철도국선(朝鮮總督府鐵道局線) 세관소재역(稅關所在驛) 착(著) 소하물(小荷物)에 대한 조선이입세(朝鮮移入稅) 기타(其他)는 수하인(受荷人)으로부터 수수(收受)한 상(上)에서 세관(上稅關)에 납입(納入)함.

중국수출관세[支那輸出關稅]는 하송인(荷送人)으로부터 운수기관(運輸機關)에 요구(要求)가 유(有)한 때는 하송인(荷送人)으로 하여금 직접(直接) 이것을 세관(稅關)에 지불(支拂)하도록 하는 것이 가(可)함.

제9조(條) 운수기관(運輸機關)에서 화물수입수속(貨物輸入手續)의 대변(代辦)을 하는 경우에 있어서 담보(擔保)를 제공(提供)할 필요(必要)가 유(有)한 때는 수하인(受荷人)에게 담보액(擔保額)을 통지(通知)하여 수하인(受荷人)으로부터 공탁수령서(供託受領書)의 회부(廻付)를 받는 것으로 함.

제10조(條) 운수기관(運輸機關)에서 시행(施行)하는 통관(通關)의 대변(代辦)에 대하여는 요금(料金)을 수수(收受)하지 아니함. 단(但) 통관검사(通關檢査) 때 당해[該1]하물(荷物)의 수선(修繕) 등(等)을 위하여 특히 요(要)하는 비용(費用)에 관하여는 이 한(限)에 부재(不在)함

제8조(條)의 규정(規定)은 전항(前項) 단서(但書)의 경우에 이것을 준용(準用)함.

제11조(條) 수하인(受荷人)이 제8조(條) 및 제10조(條)의 관세(關稅) 기타(其他)의 지불(支拂)을 하지 아니한 때는 하송인(荷送人)으로부터 이것을 수수(收受)함으로 함.

수출입면장(輸移出入免狀)의 교부(交付)를 받는 것이 불능(不能)하거나 또는 기타(其他)의 사정(事情)에 의하여 당해(當該) 하물(荷物)을 발송역소(發送驛所)에 반환(返還)한 경우에 있어서는 관세(關稅) 기타(其他)의 비용(費用)은 하물(荷物)과 상환(相換)으로 하송인(荷送人)으로부터 이것을 수수(收受)함.

제12조(條) 수하인(受荷人)이 관세(關稅) 기타(其他)의 지불(支拂)을 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수출입면장(輸移出入免狀)의 교부(交付)를 받는 것이 불능(不能)한 경우 등(等)으로서 당해(當該) 하물(荷物)의 품질(品質) 기타(其他) 불가피(不可避)한 이유(理由) 때문에 발송역소(發送驛所)에 반환(返還)함이 불능(不能)한 때는 운수기관(運輸機關)은 임기(臨機)의 처분(處分)을 함이 가(可)함. 이 경우에 있어서는 관세(關稅) 기타(其他) 당해(當該) 하물(荷物)에 요(要)한 비용(費用)을 계산(計算)하여 과잉(過剩)이 유(有)하면 이것을 하송인(荷送人)에게 환불(還拂)하고, 부족액(不足額)은 하송인(荷送人)으로부터 이것을 수수(收受)함.

전항(前項)의 규정(規定)은 하송인(荷送人)이 전조(前條)의 지불(支拂)에 응(應)하지 아니한 경우에 이것을 준용(準用)함.

1) 역자: 원문에는 '解'로 誤記되어 있다.

제13조(條) 하송인(荷送人) 또는 하송인(荷送人)이 지정(指定)한 통관담당자(通關擔當者)가 단동역(安東驛)에서 운송(運送) 중(中)인 하물(荷物)에 대하여 통관수속(通關手續)을 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당해(當該) 역(驛)으로부터 하물도착(荷物到着)의 통고(通告)를 받은 후(後) 세관개청시간(稅關開廳時間) 7시간(時間) 이내(以內)에 운수기관(運輸機關)의 보관(保管) 하(下)에 통관수속(通關手續)을 종료(終了)함이 가(可)한 것으로 함.

하송인(荷送人) 또는 하송인(荷送人) 지정(指定)한 통관담당자(通關擔當者)가 전항(前項)의 시간(時間) 내(內)에 통관수속(通關手續)을 종료(終了)하지 아니한 때는 그 시간(時間) 경과(經過) 후(後)에 대하여 하물보관료(荷物保管料)를 수수(收受)함. 단(但) 세관(稅關)의 사정(事情)에 의하여 통관수속(通關手續)을 종료하지 아니한 시간(時間)에 대하여는 이 한(限)에 부재(不在)함.

전항(前項)의 하물보관료(荷物保管料)는 운수기관(運輸機關)이 정(定)한 도착하물(到着荷物) 인수지연(引受遲延)의 경우에 있어서의 보관료(保管料)와 동일(同一)함.

제14조(條) 수입원료품(輸入原料品)에 의한 제조품(製造品) 또는 주류(酒類)를 조선(朝鮮)으로부터 수출(輸出)하여 여세(戾稅)²⁾ 또는 교부금(交付金)을 받고자 하는 자(者)는 그 청구방법(請求方法)을 운수기관(運輸機關)에 위탁(委託)함을 득(得)함. 이 경우에 있어서는 하물탁송(荷物託送) 때 이것을 당해(當該) 역(驛)에 통고(通告)하고 필요서류(必要書類)를 제출(提出)함이 가(可)한 것으로 함.

운수기관(運輸機關)에서 전항(前項)의 대변(代辦)을 하기 위하여 특히 요(要)하는 비용(費用)은 여세(戾稅) 또는 교부금(交付金) 수취인(受取人)의 부담(負擔)으로 함.

제15조(條) 탁송수하물(託送手荷物) 및 부수소하물(附隨小荷物)의 통관검사(通關檢査)는 단동역(安東驛)에서 운수기관(運輸機關) 보관(保管) 하(下)에 여객(旅客) 스스로 이것을 받음이 가(可)함으로 함.

여객(旅客)이 전항(前項)의 검사(檢査)를 받지 아니한 경우 당해(當該) 하물(荷物)에 쇄정·봉인(鎖錠封印)이 무(無)한 것은 운수기관(運輸機關)에서 세관리(稅關吏)의 검사(檢査)에 입회(立會)하여 과세품(課稅品)이 무(無)한 때는 그대로 계송(繼送)의 취급(取扱)을 하는 것으로 함.

전항(前項)의 경우 당해(當該) 하물(荷物) 중(中)에 과세품(課稅品)이 유(有)하거나 혹은 당해(當該) 하물(荷物)에 쇄정·봉인(鎖錠封印)을 행함이 유(有)한 것은 단동역(安東驛)에 유치(留置)함이 가(可)함. 이 경우에 있어서는 당해(當該) 하물(荷物) 도착(到着) 후(後) 7일간(日間) 무료(無料)로 이것을 보관(保管)하고, 그 이후(以後)는 운수기관(運輸機關)이 정(定)한 수하물보관료(手荷物保管料) 혹은 부수소하물보관료(附隨小荷物保管料)를 수수(收受)함.

2) 역자: 조정·減稅 등으로 납세자에게 되돌려 주는 세금을 말한다.

운수기관(運輸機關)에서 전항(前項)의 수하물(手荷物) 또는 부수소하물(附隨小荷物) 탁송자(託送者)의 소재(所在)를 알고 있음을 득(得)한 때는 즉시 당해(當該) 하물(荷物)이 단동역(安東驛)에 억류(抑留)하고 있는 뜻[旨]을 통고(通告)하고, 탁송자(託送者)의 지시(指示)에 의하여 이것을 처리(處理)함.

전항(前項)의 경우에서 수하물(手荷物) 또는 부수소하물(附隨小荷物) 탁송자(託送者)의 청구(請求)가 유(有)한 때는 운수기관(運輸機關)에서 당해(當該) 하물(荷物)의 통관수속(通關手續)을 대변(代辦)함.

제7조(條), 제8조(條), 제10조(條) 및 제12조(條)의 규정(規定)은 전항(前項)의 경우에 이것을 준용(準用)함.

제3항(項)의 하물(荷物)로서 쇄정·봉인(鎖錠封印)을 행함이 유(有)한 것이 도착(到着) 후(後) 3개월(箇月)을 경과(經過)하여도 탁송자(託送者)의 소재(所在)가 불명(不明)한 때는 운수기관(運輸機關)은 세관리(稅關吏)의 입회(立會)를 구(求)하여 탁송자(託送者)의 위험(危險)과 비용(費用)으로써 해장(解裝)하여 내용(內容)의 검사(檢査)를 하고, 탁송자(託送者)를 알고 있음을 득(得)한 때는 전(前) 3항(項)에 준(準)하여 이 취급(取扱)을 함.

제16조(條) 전조(前條)제3항(項)에 의하여 단동역(安東驛)에 유치(留置)함이 가(可)한 수하물(手荷物) 또는 부수소하물(附隨小荷物)이 제3조(條)의 조선총독부 철도국선(朝鮮總督府鐵道局線) 세관소재(稅關所在) 역소(驛所: 신의주[新義州]를 제[除]함)에 도착(到着)함이 가(可)한 것일 때는 중국[支那] 수출수속필(輸出手續畢)의 것에 한(限)하여 운수기관(運輸機關)은 그 도착역소(到着驛所)까지 외국화물(貨物)로서 육로운송(陸路運送)을 하고, 탁송자(託送者)는 당해(當該) 착역(著驛)에서 수입수속(輸入手續)을 함이 가(可)한 것으로 함. 단(但) 이 경우에서도 탁송자(託送者)의 청구(請求)가 유(有)한 때는 운수기관(運輸機關)은 그 수속(手續)을 대변(代辦)함.

제7조(條), 제8조(條), 제10조(條) 및 제12조(條)의 규정(規定)은 전항(前項)의 경우에 이것을 준용(準用)함.

부 칙(附則)

제17조(條) 본(本) 규칙(規則)은 1927(昭和 2)년 10월 1일부터 이것을 시행(施行)함.

제18조(條) 본(本) 규칙(規則)은 특별히 정(定)한 경우를 제외(除外)하고, 조선총독부 철도국선(朝鮮總督府鐵道局線)을 경유(經由)하여 조선(朝鮮) 내(內) 각(各) 사설철도선(私設鐵道線) 및 사와야마형제상회[澤山兄弟商會]와 남만주철도주식회사선(南滿洲鐵道株式會社線) 간(間)에 발착(發著)하는 하물(荷物) 및 남만주철도주식회사선(南滿洲鐵道株式會社線)을 경유하여 조선총독부 철도국선(朝鮮總督府鐵道局線)과 사조철로공정국선(四洮鐵路工程局線) 또는 길장철로관리국선(吉長鐵路管理局線) 혹은 동지철도회사선(東支鐵道會社線) 간(間)에 발착(發著)하는 하물(荷物)의 단동역(安東驛)에 있어서 통관방법(通關方法)에 이것

을 준용(準用)함.